

서울고등법원 2024. 9. 5 선고 2024나2003921(본소), 2024나2003938(반소) 판결 [기계인도 및
매매대금 청구의 소 · 매매대금반환]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9. 5 선고 2024나2003921(본소), 2024나2003938(반소)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1가합101688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국중권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C

변론 종결2024. 7. 18.

판결 선고2024. 9. 5.

제1심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1가합101688(본소),

2022가합104769(반소) 판결

주문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주식회사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246,000,000원 및 그중 1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4. 28.부터, 66,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8.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중 75%는 원고(반소피고)가, 25%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본 소 청 구 취 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파산채권은 150,000,000원임을 확정한다(원고는 2022. 5.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기계인도 청구를 취하하였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2023. 6. 22. 파산선고가 이루어짐에 따라 파산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반 소 청 구 취 지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246,000,000원 및 그중 1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4. 28.부터, 66,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8. 25.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본소]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파산채권은 150,000,000원임을 확정한다.

[반소]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3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7~8행의 "3D 마스크 가공 기계 2대"를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로 고쳐 쓰고 이 판결 별지 부분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17행의 "J"을 "B"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3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소결론 - 원상회복의무의 성립 및 범위

1)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파산채무자 B으로부터 소송을 수계한 피고에게, B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합계 246,000,000원(= B이 직접 원고에게 지급한 180,000,000원 + 원고와 B의 합의에 따라 G이 B에 갈음하여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66,00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자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B의 이 사건 각 기계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0. 8. 13. 파주시 K에 있는 B의 공장에 이 사건 각 기계가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B이 이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며,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 이때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25138, 2514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기계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한편 계약의 해제에 따라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수령한 금전을 반환할 때에는 받은 날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민법 제548조 제2항),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매도인은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받은 날부터 민법 또는 상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정이자의 지급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므로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닌 바,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 등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8892 판결 등 참조).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위 이자에는 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17668 판결 등 참조),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대가적 채무 간에 이행거절의 권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비록 이행거절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행거절 권능의 존재 자체로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19다218547 판결 등 참조).

4)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관련하여 상인으로서 상사 법정이율에 따른 법정이자 지급의무를 부담하며, 원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B의 이 사건 각 기계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상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관련하여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5)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합계 246,000,000원 및 그중 18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4. 28.1) 부터, 66,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8. 25.2)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또는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제1주장 원고와 B은 중국산 고속 생산 기계를 추가로 도입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이 사건 각 기계 중 1대를 B이 아닌 G에 공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면서 그 계약서에 1분당 100매의 마스크 생산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와 B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1분당 100매의 마스크를 생산하는 성능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변경된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1분당 100매의 마스크를 생산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각 기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B이 목적물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해제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2) 제2주장 비록 이 사건 각 기계를 가동하여 1분당 100매의 마스크를 생산할 수는 없었지만 1분당 60~70매의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고 그 밖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간단하게 보수를 하는 것만으로도 1분당 100매의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성능을 충분히 갖출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기계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B의 해제권이 성립하지 아니하며, 또한 이 사건 각 기계를 쉽게 보수할 수 있었음에도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제3주장 B은 이 사건 각 기계에 1분당 100매의 마스크를 생산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것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B의 해제권은 성립할 수 없다.

4) 제4주장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검사하여 하자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데(상법 제69조 제1항), B은 2020. 8. 13. 이 사건 각 기계를 인도받고 약 3개월이 지난 2020. 11.경에야 이 사건 각 기계의 하자를 주장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를 때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

5) 제5주장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기계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만약 B의 이 사건 각 기계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라면 원고가 B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 기계의 가액(396,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246,000,000원 상당의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상계하는바, 이로써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채권은 소멸하였다.

6) 제6주장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기계와 관련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 3,600만 원 및 원고가 2021. 1. 12. B에 지급한 6,600만 원 등 합계 1억 200만 원과 관련하여 원고는 B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가지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할 돈에서 위 1억 20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할 때, 원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20. 7. 27. G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기계 중 1대를 12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이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원고와 G 사이에서 작성되었고 원고는 G으로부터 2020. 8. 25. 66,000,000원(부가가치세 6,000,000원 포함, 이하 같다)을, 2021. 1. 12. 66,000,000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 원고와 G 사이에 작성된 위 매매계약서에는 1분당 100매의 마스크 생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는 제1심 변론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기계를 매수하는 것이지만,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사업 관련 지원금 수령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원고가 G에 이 사건 각 기계 중 1대를 납품하고 G이 이를 B에 공급하는 외관을 취하기로 하여 원고와 G 사이에 위 기계 1대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고 역시 이에 대하여 별다른 다툼이 없었던 점, ② 원고는 G과 매매계약을 작성한 이후 B에 이 사건 각 기계 2대 전부를 인도하였고 이후 위 각 기계의 하자 보수 등과 관련하여서도

B과 협의를 진행하였던 점, ③ 이 사건 각 기계의 매매대금이 1대당 1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G으로부터 1억 2,000만 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6,000만 원은 여전히 B를 상대로 청구하고 있는 점, ④ B은 이 사건 각 기계를 인도받은 이후 마스크 생산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11.경 I에게 의뢰하여 위 각 기계를 수리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각 기계의 성능이 개선되지 아니하자 2021. 1. 14. B 측에 문자메시지(을 제9호증)를 보내 위 각 기계를 회수하고 자금을 마련하여 매매대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G 사이의 매매계약서는 피고 주장과 같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이며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B이 이 사건 각 기계를 인도받았을 당시 1분당 100매의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스크 귀곤 접촉 문제, 프로그램과 부품의 결함 등 다양한 하자가 존재하였던 점, ② 원고 역시 이 사건 각 기계의 하자를 인식하여 용역대금 4,000만 원(그중 1,000만 원은 실제로 지급되었다)에 I에게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I는 약 3주 간의 작업에도 불구하고 하자를 개선하지 못하고 수리를 포기한 점, ③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기계를 가동하여 1분당 60~70매의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기계는 지속적으로 일정한 수량의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산능력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기계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고 위 하자를 보수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이에 따라 B의 해제권은 적법하게 성립하며, 그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기계에 대한 시운전이 성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B이 원고로부터 위 각 기계를 인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할 때, 이는 원고가 B에 대하여 기계 인도 후 정상화 조치(제품 수리)를 통하여 성능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것으로 B은 제품 수리를 통하여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하자를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기계의 하자가 기계 인도 후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는 점을 B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제4주장에 대한 판단 상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부분 원고 주장의 요지는 B이 2020. 8. 13. 이 사건 각 기계를 인도받고 약 3개월이 지난 2020. 11.경에야 이 사건 각 기계의 하자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의 대표자가 위 인도 직후인 2020. 9. 2. 원고의 대표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위 각 기계의 하자에 대하여 항의하며 보수를 요청하였던 점(을 제8호증), ② 위 대화 내용에 따를 때 B은 위 대화 이전에도 원고 소속 직원인 L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기계의 하자 보수를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B은 이후에도 원고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하여 2020. 11.경 원고의 의뢰를 받은 I가 하자 보수 작업을 시작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은 이 사건 각 기계를 수령한 이후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의 통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제5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각 기계가 멸실되는 등으로 B의 이 사건 각 기계 인도 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공장에 이 사건 각 기계가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B이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기계 인도 의무 이행불능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6) 제6주장에 대한 판단 설령 원고가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그 원인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고로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3),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4)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이득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또한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21. 1. 12. 스스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B에 6,60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급부부당이득의 주장·증명책임에 관한 위 법리에 따라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원고가 주장·증명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송금행위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앞서 본 이 사건 계약 및 원고와 G 사이의 계약 체결의 경위와 그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외관상 G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G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았는데 위 지급 시점까지 이 사건 각 기계를 하자 없는 상태로 인도할 의무를 완료하지 못하여 지급받은 돈 중 계약금을 초과하는 돈을 B에 반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주문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김봉원

판사최승원

판사김태호

별지

1)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180,000,000원을 원고 계좌로 최종 지급받은 날이다.

2) 원고가 G으로부터 이 사건 각 기계 중 1대에 대한 대금 중 50%인 66,000,000원을 지급받은 날이다(갑 제4호증의 4 참조).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①~⑥ (생략)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2015.2.3., 2016.2.17., 2022.2.15., 2023.2.28.>

1. (생략)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교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3.~9. (생략)